# 집수조로 진입하던 로더가 전복되어 익사

## 재 해 개 요

2013년 5월경 건설용 골재 생산현장에서 로더의 버켓에 물을 담아 먼지가 발생하는 가설도로의 노면에 살수를 하기 위해 로더를 운전하여 집수조(물응덩이)로 진입하다가 로더가 전복되어 익사한 재해임

## 현 장 사 진



<사진 1 : 집수조에 전복된 로더>



<사진 2 : 로더가 전복된 집수조(물응덩이)>

## 재해발생 과정

### ㅇ 작업현장 상황

- 차량계 건설기계 등이 접근 시 전복 위험이 있는 집수조 입구에 진입을 방지하는 시설 및 경고표지 미설치

#### ㅇ 재해자 행동상황

- 급경사로 굴착되어 쉽게 전복될 수 있는 집수조로 로더를 운전하여 진입

## 재해발생 원인

- 로더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않고 전복 위험이 있는 집수조로로더를 운전하여 진입
- 로더는 토사, 자갈, 골재, 원석 등을 운반하거나 트럭에 상차를하는 작업용으로 사용하나 주용도 외의 살수 작업에 사용

## 동종재해 예방대책

## ㅇ 전도 등의 방지조치 실시

- 차량계 건설기계(로더 등)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로더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, 갓 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

## ㅇ 주용도 외의 사용 금지

-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로더 등 차량계 건설 기계는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함